

1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106호 1999. 2. 5

개 정 이 유

종전에는 민간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이 금지되었으나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1997. 3. 27, 법률 제5318호)되어 민간에 의한 검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에 의한 검정이 허용됨에 따라 기술자격중 민간이 검정할 수 없는 기술자격을 정하고 기타 기술인력의 수요변화에 따라 일부 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민간이 검정할 수 없는 기술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술자격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종목을 정함(령 제13조의2 및 별표 6의2 신설).
- 나. 전기철도관련 신기술 인력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철도기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종목을 새로운 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함(령 별표 1).
- 다. 모래채취기운전기능사를 준설선운전기능사에 통·폐합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건설기계 분야의 일부 기술자격 종목을 통·폐합함(령 별표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검정의 금지)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외의 자가 검정을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으로 한다.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기술자격
2.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술자격
3.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술자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외의 자가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은 별표 6의2와 같다.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중개정령 제36조제4항 본문중 “전파통신산업기사 및 전파통신기능사”를 “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 및 전파전자기능사”로 한다.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중개정령 별표 1의 제1호 기술·기능분야의 1. 기계 직무분야의 기능사란중 “스크레이퍼운전”, “쇄석기운전”, “사리채취기운전”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4. 전기 직무분야의 기사란 및 기능사란중 “철도신호” 다음에 “전기철도”를 각각 신설하며, 동표의

6. 통신 직무분야의 기사란·산업기사란 및 기능사란중 “전파통신” 다음에 “전파전자”를 각각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중개정령 별표 6의 주무부장관의 산업자원부장관란중 “포장”을 “포장(기술사·기사·산업기사)”으로, “품질관리”를 “품질관리, 공장관리”로, “시각디자인”을 “시각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으로 하고, 동표의 정보통신부장관란중 “전파통신”을 “전파통신, 전파전자”로, “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스운용”을 “정보기술”로 하며, 동표의 보건복지부장관란중 “조주, 식품”을 “조주”로 하고, 동표의 환경부장관란중 “환경”을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로 하며, 동표의 건설교통부장관란중 “포장”을 “포장(기능사)”으로 하고, 동표의 건설교통부장관(철도청장)란중 “철도보선”을 “철도보선, 철도”로 한다.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표중 “전파전자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전파전자기사 2급”,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를 각각 삭제하고, “식품제조기사 1급” 다음에 “산림경영기사 1급”을, “식품기사”다음에 “산림경영기사, 산림공학기사중 택일”을, “식품제조기사 2급” 다음에 “산림경영기사 2급”을, “식품산

업기사” 다음에 “산림경영산업 기사, 산림
공학산업기사중 택일”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
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표의 오른쪽
쪽란에 기재된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사리채취기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	--

[별표 6의2]

국가의의 자가 검정을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제13조의2관련)

1. 기술·기능분야

직무분야	기술자격종목
1. 기계	건설기계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건 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우 저운전기능사, 천장기중기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 로울러운전 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 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보일러기능 장·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철도차량기술 사·기사·산업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철도 동력차기관정비산업 기사·기능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기능사, 객화차정비산 업기사·기능사, 열차조작산업기사·기능사, 용접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전기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차 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유체기계기술사,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

직무분야	기술자격종목
1. 기계	철골구조물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금형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산업기계기술사
2. 금속	비파괴검사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금속재료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철야금기술사, 비철야금기술사
3. 화공 및 세라믹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공업화학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학장치설비기술사, 화학공장설계기술사, 세라믹기술사, 고분자제품기술사
4. 전기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기기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기사·기능사, 철도신호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5. 전자	공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6. 통신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파전자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통신기술사
7. 조선	선박설계기술사, 조선기사·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박 건조기술사, 선체 건조기능사, 선박기계기술사, 선박기관정비기능사
8. 항공	항공기관기술사, 항공정비기능장, 항공기사·산업기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직무분야	기술자격종목
9. 토목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산업기사·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산업기사, 항만및해안기술사, 도로및공학기술사, 포장기능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철도기술사, 철도보선기사·산업기사, 보선기능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기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10. 건축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일반시공기능장·산업기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기사·산업기사, 유리시공기능사, 비계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기능사, 거푸집기능사, 철근기능사
11. 섬유	방사기술사, 제포기술사, 방적기술사, 생사기술사, 염색가공기술사, 의류기술사
12. 광업자원	지하자원개발기술사, 지하수기사·산업기사, 시추기능사, 탐사기술사, 지하자원처리기술사,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광산환경기능사,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약취급 기능사
13.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14. 국토개발	도시계획기술사·기사, 조경기술사, 지적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15. 농림	농화학기술사·기사, 종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설원예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산림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축산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임산가공기술사·기사·산업기사
16. 해양	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어로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수산제조기술사·기사·산업기사
17. 산업디자인	제품대자인기술사

직무분야	기술자격종목
18. 에너지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핵연료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열관리기사·산업기사
19. 안전관리	기계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소방설비기술사·기사·산업기사, 가스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20. 환경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소음진동기술사·기사·산업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21. 산업응용	식푸기술사·기사·산업기사, 농산식품가공기능사, 수산식품가공기능사, 축산 식품가공기능사, 공장관리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포장기술사·기사·산업기사, 응용지질기술사·기사, 지구물리기술사, 승강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공정관리기사·산업기사
22. 교통	교통기술사·기사·산업기사

2.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	기술자격종목
기타서비스	조리기능장,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북어조리기능사, 이용기능장·기능사, 미용기능장·기능사

주택회보